

#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(안)

의안  
번호 211

제출년월일 : 1997.4.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고등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
-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 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산업인력수요에 대처하고 나아가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립 옥천전문대학 설치

## □ 주요골자

- 옥천전문대학을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함(안제1조)
- 대학운영비는 학생등록금, 정부지원금, 도재정등으로 충당(안제3조)
- 대학의 학과, 학생정원, 학사는 학칙으로 정함(안제4조)
- 대학에는 학장을 두며, 교무를 통할하고 대학을 대표함(안제5조)
- 대학에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 및 조교를 둠(안제6조)
- 대학의 운영, 관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음(안제10조)

## □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3(직속기관의 설치)
- 내무부 공립대학(직속기관)설치승인서
- 교육공무원법 제54조, 제55조 :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

참 고 1.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(안)

2. 기타참고자료(관계법령등)

##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(안)

제 1 조(설치목적)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·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도립전문대학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 2 조(명칭및위치) 대학의 명칭은 “옥천전문대학”이라 하며,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의 6필지에 둔다

제3조(재정운영) ① 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할수 있다.

② 대학운영비는 학생등록금, 정부지원금과 도재정등으로 충당한다

제4조(학과) 대학에 설치되는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학장)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둔다.

②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

제6조(교원) ① 대학에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 및 조교 등의 교원을 둔다.

②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은 학생을 교수·연구·지도하며, 조교는 전임강사이상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.

제7조(학과장) ①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.

② 학과장은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겸임 보직한다.

③ 학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.

제8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대학에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둘수있다.

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장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겸임보직하며, 학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.

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직제) 대학의 직제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감독 및 승인) 대학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학과의 설치 및 폐지
2. 학생정원의 증감
3. 재정에 관한 사항
4.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
5.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법, 교육공무원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